

# 「2025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 3차

창업기업에게 신기술·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『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』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6일  
(재)광주테크노파크 원장

## 1 지원 개요

- 지원목적:**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의 현장실증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
- 지원대상:**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성숙도(TRL)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기업

- ※ 신산업 창업분야: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
- ※ 광주 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(본사, 연구소, 지점 등)
- ※ 본사 이전 희망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공  
- 선정평가 가점, 우수기업 후속지원(마케팅&제품고도화&글로벌진출지원 등)

- 모집기간:** 공고일로부터 ~ 2025. 7. 31.(목), 14:00 限
- 지원기간:**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월 30일 까지(예정)
- 지원분야:** 총 4개 분야(3.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조)

① 솔루션형- 공공수요발굴형	② 솔루션형- 민간수요발굴형	③ 솔루션형 -대자보형	④ 자율형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

- 지원규모:** 총 30개사 내외 1,250,000천원(예산 소진시까지)  
※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

## 2

## 솔루션형·자율형 지원 요건

### □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

- 기술성숙도(TRL)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
  - TRL 6단계 및 법의 저촉여부: 사전검토시 전문가를 통해 검증 예정
  - 창업 7년 이내 기업(광주지역 기업 및 관외기업)

- ▶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단계로, 상용화 직전의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
- ▶ 신산업창업분야(27개 분야, 중소기업창업지원법) 관련 기업: 최대 **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**
- ▶ 관외기업: 사업선정시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必(본사, 연구소, 지점 등)

※ 이 밖의 유형별 별도 지원대상은 3.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

- 기업이 실증하고자 하는 제품(기술)에 적합한 실증내용과 실증장소(기관)를 사전 조사하고 현실성 높게 구체화하여 사업신청 → 지원기업 선정 후 실증 예산·장소 지원

### □ 지원요건

- 협약체결일로부터 **1개월 이내**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실증완료 가능한 기업
- 동일한 실증대상(제품·서비스)으로 정부·지자체 또는 공공기관, 민간기업에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을 것
- 정부·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&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
- 자기부담금: 지방비 지원금액의 10% 이상 기업 자기부담 필수(현금)
  - ex) 지방비 지원금이 7천만원 → 자기부담금 7백만원 = 총사업비 77백만원(부가세 제외)
  - ※ 자기부담금도 사업비에 포함되므로 총괄기관이 관리·감독
- 선정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
- 보증기간: 협약기간 + 1년(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)
- 보증내용: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
  - ※ 관외기업: 광주광역시 이전에 대한 보증 내용 추가 必

□ **지원규모 결정**

- 지원기업 수와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지원금은 인건비(실증 실무인력 및 실증장소 배치인력 보수), 직접비(실증에 필요한 장비·재료·안전 관련 보험 등 구입, 실증제품 및 서비스의 설치·운영·유지보수, 철거 및 원상복구 경비) 등으로 사용
  - ※ 지원금 산정기준: 별첨 참고
- 기술개발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용 집행은 불가하나, 시험 인증 등의 비용은 가능

□ **실증기간: 협약체결일 ~ 2026년 1월 30일(예정)**

□ **지원내용**

- **지원내용:**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, 실증확인서, 후속지원 등

- 실증장소: 광주광역시 내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지원
- 실증비용: 실증기간 중 제품(서비스)의 설치, 운영·유지보수, 일부개선,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(\* 실증비용은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)
- 실증확인서: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
  - \* 평가결과 우수기업에 한함
- 후속 연계지원: 판로확대, 투자연계, 글로벌 진출 지원 등

※ 실증 이후 납품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예정

**3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**

(단위: 천원)

프로그램	지원내용			지원개사	지원규모(건)
<b>솔루션형   공공 수요 발굴형</b>	○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/제품 지원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(지정 과제)			30개사 내외	30,000천원~ 70,000천원
	지원사항	실증장소	실증비용		
			○		○
<b>솔루션형   민간 수요 발굴형</b>	○ 민간 협력파트너가 보유한 특화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제품 설치·실증(자유 과제)				30,000천원~ 70,000천원
	지원사항	실증장소	실증비용		
			-		○
<b>솔루션형   대자보형</b>	○ 광주시 대·자·보(대중교통·자전거·보행) 도시 실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증 지원(지정과제)				30,000천원~ 50,000천원
	지원사항	실증장소	실증비용		
			○	○	
<b>자율형</b>	○ 광주 지역 공공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제 자유제안			30,000천원~ 70,000천원	
	지원사항	실증장소	실증비용		
			○	○	

□ **솔루션형-공공 수요 발굴형**

공공기관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/제품 지원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업화 지원

- 지원금액: 30,000천원 ~ 70,000천원
- 지원과제: 사전에 발굴된 수요(붙임 1. 공공기관 수요조사서) 문제 해결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·기술
- 지원내용: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, 실증확인서, 후속지원 등
- 수행방법 예시
  - 폭염발생 전 실증제품(서비스) 설치 -> 폭염기간 효과검증
  - 도시철도 이용 편의 시스템 설치 ->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만족도 향상

< 유의사항 >

- 실증기관(공공기관) 수요조사서를 참조,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하며, 제안 기업당 1개 실증기관 수요에 신청 가능
- ※ 제출된 계획서를 공공기관에서 사전 검토 후 '수용' 할 경우에만 선정평가 대상으로 선정

□ **솔루션형-민간 수요 발굴형**

민간 분야의 수요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민간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검증하고 실증데이터 확보를 통해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사업화 지원

- 지원규모: 30,000천원 ~ 70,000천원
- 지원과제: 민간 협력파트너의 수요 및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민간장소를 활용하여 실증할 수 있는 제품·기술
- 지원내용: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, 실증확인서, 후속지원 등
- 민간자격: 대학(산학협력단, 종합병원, 대·중견기업 등)
  - 국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단체/기관/기업으로 실증 수행을 위한 장소, 설비, 시스템, 사용자 기반의 물리적·운영적 환경 보유
  - 민간 실증기관의 자격

기관	해당내용
대학	-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산학협력단
병원	-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
기업	- 중견기업 제2조 제1항의 '중견기업' - 중소기업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 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'대기업'

- 민간 실증기관의 본사(본점)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나 실증 장소는 반드시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함

< 유의사항 >

- 민간 실증기관(장소, 시설 등)을 사전 협력 파트너로 발굴하여 '실증기관 파트너 협약서'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, 협약서 제출로 실증기관에서 해당 기술 실증을 '수용' 한 것으로 간주
  - '수용' 할 경우에만 평가대상으로 선정, 실증기관에서 실증 수요가 없을 경우 선정 취소, 협약체결 중지 또는 해약할 수 있음
  - 유형별 실증기관 범위

유형	장소(예시)	자격요건/범위
실사용 기반	병원, 대학 캠퍼스, 마트, 물류센터, 체험관, 공동주택 단지, 유통플랫폼 운영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사 또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제품/서비스를 사용·평가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가능</li> <li>-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</li> <li>- 공동주택 외 3,000㎡ 이상</li> </ul>
산업·설비 기반	제조공장, 농장, 플랜트, 건설현장, 스마트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증제품과 관련된 공정·설비·환경 보유 필수</li> <li>- 제조공장 500㎡ 이상</li> <li>- 건설현장 200㎡ 이상</li> </ul>
기술검증/시험기반	인증기관, 품질검사기관, 기술센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능검증, 표준시험, 인증지원 등이 가능한 인프라 보유 기관</li> </ul>

※ 단일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가 위 표 기준 이상이어야 함

□ **솔루션형-대·자·보형**

광주시의 대·자·보(대중교통·자전거·보행) 도시 실현을 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 실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/제품 지원

- **지원규모:** 30,000천원 ~ 50,000천원
- **지원 과제:** 대자보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발 기술의 기술 이전 또는 협력 기반을 통해 실증 할 수 있는 제품·기술
  - 지정공고: 자전거도로 AI 안전관리기술(붙임 2 대자보 기술수요조사서 참조)
  - 자유공모: 대자보 기술조사서 특허리스트 10건 중 선택 1(붙임 3 참조)
- **지원내용:**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, 기술이전비용, 실증확인서, 후속지원 등
- **수행방법 예시**
  - 대·자·보 기술 공개(개발기술 및 특허) → 기업/제품 모집(실증 시나리오 수립) →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 → 테스트베드 구축 → 실증지원

□ 자율형

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시정현장에 적용하여 제품성능, 사용자 반응, 시장 적용 가능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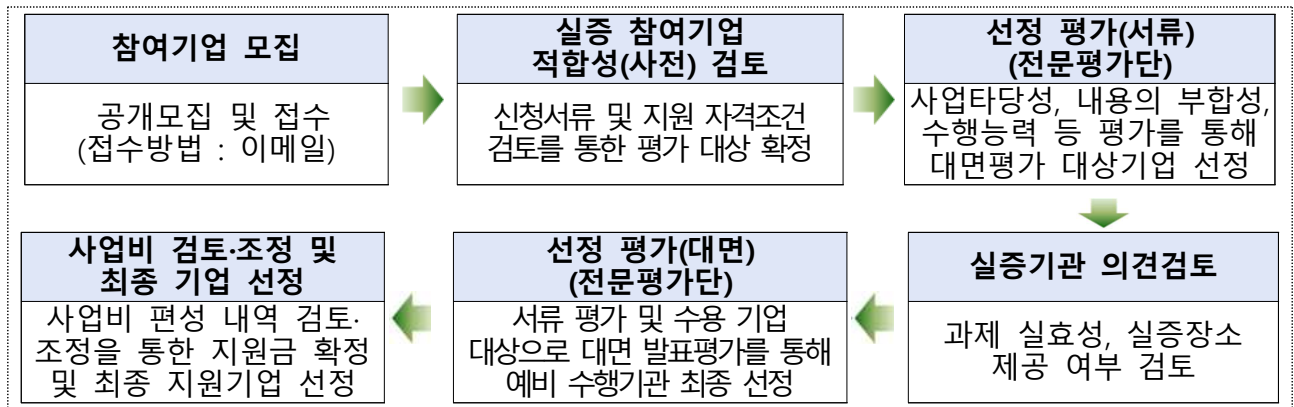
- 지원규모: 30,000천원 ~ 70,000천원
- 지원과제: 광주지역 공공기관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제 자유제안
- 지원내용: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, 실증확인서, 후속지원 등
- 수행방법: 실증계획(실증 시나리오)을 수립하여 수행

< 유의사항 >

- 실증계획(실증 시나리오) 수립 시 실증장소(기관)을 사전 조사하고, 현실성 높게 구체화하여 사업 신청
- ※ 제출된 계획서를 공공기관에서 사전 검토 후 '수용' 할 경우에만 선정평가 대상으로 선정

## 4 선정방법 및 주요평가 항목

□ 추진절차



□ 선정방법

-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(1차)
  -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반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
  - 6.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
  -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'지원 가능대상'으로 분류하고,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를 고득점 순 서면 평가 통과기업으로 선정

○ 실증기관 의견검토

- 서면평가 통과 기업의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실증기관의 수용 의사 등 의견 수렴

○ 대면평가(2차)

-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면평가 진행
-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종합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선정

□ 평가기준(서면·대면)

○ 솔루션형(공공수요 발굴형, 대·자·보형), 자율형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술성(20)	○ 실증기술의 우수성, 안정성, 신속한 현장적용 가능성 등	20
광주 시정 적합성(30)	○ 광주의 시정혁신 기여도, 실증기관과의 매칭 적합성 등	30
실증 효율성(30)	○ 실증계획,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, 효율성 등	30
사업성(20)	○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, 사업화 의지	20
<b>합 계</b>		<b>100</b>

○ 솔루션형(민간수요 발굴형)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술성(30)	○ 실증기술의 우수성, 안정성, 신속한 현장적용 가능성 등	30
광주 시정 적합성(10)	○ 시정혁신 및 시민편익 증진, 실증기관과 매칭 적합성 등	10
실증 효율성(30)	○ 실증계획, 실증시나리오의 구체성과 적절성, 효율성 등	30
사업성(30)	○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, 사업화 의지	30
<b>합 계</b>		<b>100</b>

## 5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**접수기한:** 공고일로부터 ~ 2025. 7. 31.(목), 14:00 限
- **공고방법:** (재)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 확인
- **신청방법:** 이메일 접수
- **문의처 및 접수처**

기관명	담당자	문의처	이메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	전서연 선임	062-239-9611	jsy@gjtp.or.kr

※ 제출시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, 제출시간 이후 서류 수정 불가

### □ 제출서류

#### ○ 제출서류 목록

연번	서류명	원본여부	제출여부
1	▶ 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	원본	필수
2	▶ 불임. 기업(신용)정보 및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활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- 동의대상자: 대표자, 책임자(과제접수시 필수 제출)	사본	필수
3	▶ 불임.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	사본	필수
4	▶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	원본	필수
5	▶ 최근 3년간('22~'24) 회계감사보고서(감사의견 포함) 또는 표준재무제표(날인본 표지 포함) ※ '24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,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,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	사본	필수
6	▶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	필수
7	▶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(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)	원본	필수
8	▶ 불임.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원본	필수
9	▶ 불임. 관외기업 이전 협약서(신청일 기준 관외기업 제출 必)	원본	필수
10	▶ 불임. 이행서약서	원본	필수
11	▶ 별첨. 2025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_01. 자체검토표	-	필수

※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

#### ○ 제출시 유의사항

- 첨부된 신청서 양식 참조(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상세 기재 요망)
- 제출 서류명은 연번에 맞춰 제출
  - 예시) 01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기업명)
  - 03.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(기업명)
-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) 기준으로 기입

## 6

##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

### 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  - 제출서류(제안서 등) 오류발생시 전담기관(광주테크노파크) 결정에 따름
-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계획서 대리작성, 명의도용, 대리 발표 등 부정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### □ 지원 제외대상

-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
  - 신청과제의 추진내용(실증)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(NTIS) 유사검토 기준)
    - ※ 단, 일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, 수행방식, 연구단계 등이 다를 경우 유사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
  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    - ※ 기업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
  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  - ※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함
      - ▶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      - ▶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)
      - ▶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①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)

- ▶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)
- ▶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,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및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T6 이상인 경우, 그리고 설립일이 접수마감일까지 산정시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)
- ▶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▶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 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
  -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로 분류함

#### □ 지원 취소

-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,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
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

## 7

## 추진일정(안)

## □ 추진일정

추진단계	추진내용	일정	추진주체
① 사업공고	·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	~'25. 7. 31.(목)	지원기관
② 신청서 접수	· 지원서류 E-mail 또는 방문 접수	~'25. 7. 31(목), 14:00	신청기업
③ 신청기업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	·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· 적격여부 검토 및 서면 평가 · 실증기관 의견검토	~'25. 8. 19.(화)	지원기관
④ 대면심사	· 선정평가위원회 개최(대면)	~'25. 8. 26(화) (예정)	지원기관 신청기업
⑤ 협약체결	·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(지원기관-수혜기업)	'25. 9. ~ '26. 1월	지원기관
⑥ 실증/모니터링	· 실증추진 및 실증노트 작성, 수시보고 · 실증현황 정기-수시 점검	'25. 11월 中	지원기관
⑦ 결과보고서 제출	· 보고서 제출 -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	~'26. 2. 6(금)	수혜기업
⑧ 보고서 점검 및 최종평가	·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	'26. 2월 中	지원기관
⑨ 사업비 정산	·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지원금 지급	'26. 2월 中	지원기관
⑩ 후속지원	· 실증평가에 따른 실증확인서 발급	-	지원기관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붙임 1. 혁신기술 수요조사서 1부  
 2. 대자보 기술수요조사서 1부  
 3. 대자보 관련 특허리스트 1부  
 4~7.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

**별첨**

**기업지원비 가이드라인**

□ **사업비 산정 기준**

- (산정 기준) 실증사업 수행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
  - 기술성숙도(TRL) 6단계 이상 제품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제품 개발성(용역비 등) 비용은 산정 불가
  - 전문가 활용비, 회의비, 국내 출장비 등은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하며, 가급적 편성 지양
  - 연구시설·장비비 산정 불가
-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총괄기관 내규 등 준용

**< 사업비 편성 기준 >**

비목	세목	구분	내역 및 주의사항	필수여부	비고	
직접비	인건비	내부/외부 인건비	○ 실증 실무자(실증장소 배치인력)에 대해 광주시 지원금 20% 이내 현금 산정 가능	선택	지원금 20% 이내	
	재료비	재료비	○ 실증제품 제작비 및 개선 재료비 - 제품 대당 단가 X 투입 대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 50% 이내 사용 가능 * 당 사업은 시제품제작 사업이 아니므로 제품 제작성 비용은 최소화 지향(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용 중심으로 작성)	선택	총 사업비 50% 이내	
	연구 활동비	수수료	○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(필수) * 위탁정산수수료 : 위탁정산수수료 산정(안)을 참고	필수	선택	지원금(합산) 10% 이내
			○ 실증 관련 안전 보험료 등			
		용역비	○ 실증테스트베드 설치, 철거, 제작, 관리 용역 등 *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제품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제품 개발성(용역비 등) 비용 산정 불가			
		전문가 활용비	○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및 컨설팅 비용(여비 포함 산정 가능) * 외부 전문가만 가능,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 비용 산정 불가			
		회의비	○ 자문회의 및 실증에 필요한 회의 개최비 * 기업 자부담에서 사용가능(지원비 집행불가)			
		국내여비	○ 참여인력의 국내여비 - 관외여비에 한하여 실비(교통비) 지급			
	인쇄/복사비	○ 사업 관련 자료 인쇄, 복사 등	-			

□ **회계 수수료 책정 기준**

- 위탁정산 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,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
- (위탁정산 수수료) 아래 표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

**<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(안) >**

사업비 구분(총사업비 기준)	수수료(천원)	가산금	
5천만원 미만	600	○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	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800	<b>참여기관 수</b>	<b>가산금</b>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000	1개	표준수수료의 10%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500	2개 이상	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%씩 가산(2개15%), 3개(20%)